

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 
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2 월 27 일

여 수 시 장 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167호

붙임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)”을“(특수경력직 공무원 등 연가가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”을 “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경우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6회”를 “경우 해당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최대 5회까지 10년 이상이면 최대 10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
⑨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의3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 할 수 없다.

1.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

2. 의장이 지정한 선거사무지원 종사자

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재직기간 산정은 제5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. 이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월

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⑪ 의장은 근로자의 날(5월1일)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.

별표 3의 “일반”을 “일반직”으로 하고, “호봉 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”을 “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”로 하고,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“2”를 “3”으로 한다. 별표 4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“1”을 “3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)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사용한 날(日)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, 1일에 사용한 육아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. 다만,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</p>	<p>제10조(특수경력직 공무원 등 연가가산) ----- -----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----- -----.</p> 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&lt;삭 제&gt;</p>



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⑨ 의장은 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(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[별표 3]

특수경력직공무원

연가가산 방법(제10조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 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(일반공무원 등의

⑨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의3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 할 수 없다.

1.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
2. 의장이 지정한 선거사무지원 종사자

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재직기간 산정은 제5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. 이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⑪ 의장은 근로자의 날(5월1일)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.

[별표 3]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

연가가산 방법(제10조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 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(일반직공무원 등의

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

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
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2일 가산

[별표 4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8조제1항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일

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)

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
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

[별표 4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4조제1항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일